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18,164,046	9,544,921
일반회계	292,316,410	8,769,492
특별회계	25,847,636	775,429
기타특별회계	25,847,636	775,429
상수도특별회계	10,105,927	303,17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03,464	21,104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687,300	50,61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49,631	16,489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12,540,972	376,22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50,119	7,504
기반시설특별회계	10,223	307

제 2 조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3,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517,519 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직무수행경비
3. 법정 의무부담금(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5. 재해대책 및 복구비